

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9. 5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과표비율 상승으로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,000분의 1.5에서 1,000분의 1.4로 인하함

3. 참고사항

- 경상북도 세정과-5269(2009.04.14)호 시세조례 표준안(행정안전부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세조례”를 “구미시세 조례”로 한다.

제91조 본문 중 “1,000분의 1.5”를 “1,000분의 1.4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기한)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<u>구미시세조례</u> 제91조(세율)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<u>1,000분의 1.5</u>로 한다.	<u>구미시세 조례</u> 제91조(세율)----- ----- <u>1,000분의 1.4</u> -----.	○ 제명띠어쓰기 ○ 도시계획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과표비율 상승 으로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나 세 율 인 하 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